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1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김형동

이달희 · 강대식 · 엄태영

안철수 · 김석기 · 고동진

최보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용 토지를 담보신탁하면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렇게 신탁된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준공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그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

지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함.

이렇게 함으로써 담보신탁된 경우에도 이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재산세와 균형을 맞추고, 주로 중소기업인 입주기업에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인 산업단지가 저해 요인 없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하는 등 현장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행자 또는"을 "시행자(해당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되어 있고 그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수탁자도 사업시행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 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해당 부동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되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 어 있고 그 위탁자가 사업시행 자인 경우 그 수탁자도 사업시 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 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 행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같다) 또는----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 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 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 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각 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 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